●환경부고시제2020-269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 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란 법 제3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의2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인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감리인을 평가하는 것 (이하 "평가"라 한다)을 말한다.
-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제1절 평가운영위원회 등

- 제3조(평가실시기관) 평가하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 제4조(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단은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은 공단에서 위촉하되, 환경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되다.
 - 1. 환경부 소관업무 부서장
 -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평가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 또는 공단 중에서 임명한다.
 -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보

- 1. 평가계획 수립
- 2. 평가대상 선정
- 3. 평가방법
- 4. 평가항목 및 배점
- 5. 평가등급 결정 및 공개
- 6. 운영위원회 운영
- 7.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결과
- 8.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 제6(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평가실무위 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환경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각각 1명이상,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
 - 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⑤ 위원장은 평가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단 직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⑥ 평가실무위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평가실무위원회의 업무)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평가 세부일정 수립
 -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 3. 세부 평가방법 수립
 - 4. 평가표 개발 및 보완
 - 5. 평가반 구성 및 운영
 - 6. 평가결과의 집계 및 검토
 - 7. 운영위원회에서 위임 · 결정된 사항
 - 8. 그 밖에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평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평가기준 및 방법 등

- 제8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평가대상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인으로 제4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리인으로 한다. 다만, 공고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감리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평가는 2년 주기로 하되, 만약 평가 기간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가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기준 등) ① 공단은 법 제30조의5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별표 5의2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평가내용은 평가대상 감리인의 최근 평가 이후부터 평가(현장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는 그날

보

까지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 제10조(평가계획의 공고) ① 공단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공단은 평가 실시 14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 평가대상 감리인에 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평가반) ① 평가반은 공단 소속 직원 중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 시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 실시 전에 평가반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 제12조(평가실시 등) ① 공단은 평가 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 ② 평가반은 평가대상 감리인의 사무실 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 규칙 제4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평가반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평가실무위원회에 검토의뢰 해야 한다.
 - ④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야 한다.
 - ⑤ 평가대상 감리인은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평가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감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⑦ 공단은 평가를 마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정보누설 금지 및 평가자료의 보존기한) ①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공단은 평가로 인해 수집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14조(평가등급 결정 및 유효기간)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감리인의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 ② 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환경부장관이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다음 회기 평가결과 공개 전날까지로 한다.

제3절 평가결과 공개 및 정보공유

- 제15조(평가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감리인의 평가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16조(평가결과 정보공유) 환경부장관은 감리인 평가결과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7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개정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 개정(각각 '20.6.1, '20.8.18)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배출권 할당 단위가 사업장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법 §13 및 영 §20 위임)
 - (개념) 신·증설 사업장 등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제5호·제21호 등)
 - (사전할당) 사업장 단위로 할당량 산정(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4항, 안 제19조제1항제1호 등)
 - (추가할당) 신설된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인하여 증설된 사업장으로 인하여 할당업체에 할당된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증가(안 제15조제1항제1호)
 - 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폐쇄되어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간주(안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 폐쇄 등의 사유로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간주(안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등
 - (할당취소) 사업장의 폐쇄, 가동중지·정지 기준 마련
 - 할당받은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온 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로 간주(안 제23조제5호)
 -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임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비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된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로 간주 (안 제23조제6호)
 -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자신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정지·폐쇄한 경우에 해당(안 제24조제1항)
- 나. 할당대상업체 지정·지정취소 세부절차 마련(법 제8조, 영 제9조 및 제10조 위임)
 - (사전통지) 할당대상업체 지정 관련 의견제출 절차 마련(안 제9조제3항), 지정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마련(안 제5조제2항)
 - (본 통지) 지정취소 통보 절차 규정(안 제5조제3항)